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질의 요지	답변 요지
<p>○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상 필요한 용도지역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초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지역관리상 현황이 당초 지정지역과 상이하게 달라졌다면 현황에 맞추어 변경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효선의원)</p> <p>○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착오로 변경지정 요구된 사례가 많다. 관계공무원의 작성이 요구된다 보는데 (신용진의원)</p> <p>○ 구단위기본계획업무추진이 아주 부진하다고 보는데 본 청원도 구단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토록함이 좋지 않은가(강명수의원)</p>	<p>○ 도시계획용도지역은 당초 지정지역대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현황이 현저하게 바뀌어서 당초 지정지역대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p>○ 안전에 따라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후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음.</p> <p>○ 구단위기본계획은 조속 완결되도록 구별로 촉구하고 있으며 본 청원 이외에도 현행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도 구자체의 계획으로 시정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임.</p>
<p>6. 토론요지 생략</p> <p>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p> <p>8. 심사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차 불요함.</p> <p>11. 의견서</p>	<p>등이 늘어나 일반주거지화 된 실정으로 지역현황으로 보아 전용주거지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지역을 지역현황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p> <p>.....</p> <p>돈암동 535번지 일대 봉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p> <p>1. 심사경과</p> <p>○ 청원자: 성북구 돈암2동 535-54 복악 하이츠 다동 102호 김병호</p> <p>○ 소개의원: 박별근 의원</p> <p>○ 접수일자: 1993. 6. 9(접수번호: 93번)</p> <p>○ 회부일자: 1993. 6. 11</p> <p>○ 상정일자: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 위원회('93.10.18)상정, 의결</p>

<p>2. 청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280필지(주택 약 280동 소재)인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경관 보존과 학교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1977년 12월 3일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나, 인근 아리랑로 일대는 1991년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어, 건축물(빌라, 아파트)신·개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바, 지역여건상 형평에 어긋나며, ○ 주변환경이나 위치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을 풍치지구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 기존 낡은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낡은 건폐율 때문에 중·개축이 침체되고,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한 주민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풍치지구가 해제되기를 청원하는 내용임. <p>3. 취지설명 요지(박별근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청원은 청원인 외 280가구, 1,200명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고시된 풍치지구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치지구 지정 후 약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조치없이 계속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법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 건설부 고시 이후에도 고시지역에 아파트, 빌라 등을 전설하는 것을 허가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조치이고, - 위치상으로 볼 때 경관 및 공익상 더 저해가 되는 고층아파트, 빌라에 대한 조치는 없이 유독 청원인 등에 대하여만 풍치지구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형평을 잃은 처사이므로, - 대상지역에의 풍치지구 지정고시의 취소, 또는 지구지정 해제 조치를 행정 당국에서 취해 주거나, - 풍치지구 지정으로 입은 손해에 정당한 배상을 해 주어 소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함.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재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인 등은 성북구 돈암2동 535-54호 일대는 1977.12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그중 일부지역은 1991년에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어 자유롭게 건물을 신·개축을 하고 있는데 ○ 주변환경이나 위치로 보아 청원인이 주장한 지역은 풍치지구로 남겨둘 이유가 없는데 계속 풍치지구로 둑어두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이 지역도 조속히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청원 요구지역 여건을 보면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성북동 북한산길과 성북근린공원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녹지축으로 하여 지정된 풍치지구로서 ○ 주변지역은 '89.11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풍치지구로서 기능유지가 불가하다고 보아 이를 해제하였으나, 청원 요구지역은 대지 규모가 크고 북한산 자락 지형 여건으로 미루어 풍치지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곳임. ○ 도시계획 변경은 지역 전체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곳 풍치지구해제 여부 결정은 지역현황과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청원인들이 주장한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현장을 답사해 보아도 이곳이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경관 보존이나 학교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풍치지구로 묶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p> <p>더구나 인근 아리랑로 일대는 '91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였는데 이곳은 아직도 풍치지구로 묶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p> <p>(정인섭의원)</p>	<p>○ 청원 요구지역은 풍치지구로 보존하여야 할 여러가지 지역여건 때문에 그대로 풍치지구로 유지코자 하는 것임.</p>
<p>○ 이 지역은 경사 지고 건물들도 소형건물로서 저소득시민의 생활 지원차원에서도 풍치지구 해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의지를 가지고 시 자체에서 해제할 뜻이 있나?(김형근의원)</p>	<p>○ 시에서 현재 24개의 풍치지구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전지역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p>
<p>○ 풍치지구를 해제 못 한다면 재산의 피해를 받는 정도에 맞는 적당한 보상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홍진구의원)</p>	<p>○ 도시계획운영상 문제로서 깊이 연구할 과제로 사료됨.</p>

6. 토론요지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8.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 없음.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소필지에 집합된 노후소형건물로서 건물의 중·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이 지역은 비탈진 경사면에 주택가가 완성되어 풍치지구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이미 주변지역도 풍치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이므로 지형현황에 맞추어 주민 요구대로 풍치지구가 해제되도록 본청원을 채택코자 하는 것임.

남현동지역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 견 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280필지의 대지에 약 280동에 이르는 건물이 밀집되어

1. 심사경과

○ 청원자: 관악구 남현동 602-351 나태
정 외 4명

○ 소개의원: 이영춘 의원